

企業合併會計에 관한 研究

김주택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e-mail : jtkim@chiak.sangji.ac.kr

.....
기업합병은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86년 합병회계준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이 준칙이 국제회계기준 및 합리적인 회계이론과 달라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999년 이러한 문제점과 국제회계기준에 합당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9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합병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전의 규정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병회계이론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합병회계처리준칙을 고찰한 후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관한 조항을 연구하여 세제측면에서 합병회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

I. 서론

오늘날의 기업은 경영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과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을 병행하여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 기업의 내적 성장은 자본 및 기술 경험 등의 축적된 자원을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이를 수가 있고 외적성장이란 기업의 합병 또는 다른 기업의 협조를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합병은 기업의 외적성장 전략으로 경영의 합리화 기술수준의 향상 국내외경쟁력을 강화 등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영 전략과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얻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

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기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래 기업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경제적으로 단일의 기업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합병회계처리에 패해를 막기 위하여 1950년 9월에 미국회계사협회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 CAP)에서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 : ARB) 제 40호(Business Combination)를 제정 공표 하였다. 이 회계연구공보는 기

업합병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에 대한 최초의 견해가 되었다. 그 후 계속적인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1970년 회계원칙심의회(Accounting Principle Board)의 의견서 제16호가 발표될 때까지 합병회계에 대한 지침으로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병회계에 대한 규정이 상법·세법·기업회계기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1986년에 합병회계준칙을 제정하여 10여년 간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3월에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 회계처리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법인세법에서는 1999년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기업합병·분할세제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기업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법 등의 기업합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으로 현실에 합당하지 않는 것과 필요한 법의 규정이 없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제기되어 기업합병을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병회계에 대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제정된 합병 회계처리준칙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 관련된 규정을 고찰하여 세제측면에서의 합병회계의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합병회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따라 합병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법률행위이다.¹⁾ 즉,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기타 법률에 따라 합병하여 법률상 및 경제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단일경제체제로 흡수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기업성장을 실현하는 외부적성장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기업합병은 법률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의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적 의미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들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자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이전되며 주주도 그 회사의 사원이 된다. 법률상의 합병에는 흡수합병(merger)과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있다. 경제적 의미의 합병은 상법상의 특별규정과 상관없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보아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해산·영업양도·매수·사원수용 등 모든 사실상의 합병을 포함하는 것이다.

1) 법률학사전, 법문사, 1981, p.1059

1.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회계처리

기업합병에서 중요한 것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데 있다.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이 서로 달라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미국회계사회(AIA)는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40 에서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을 구별하였다. 지분풀링법은 합병당사회사의 합병전의 소유지분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가 합병하는 회사에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의 합병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소유지분이 형성되는 것은 매수(purchase)로 구분하였다.

ARB No.40은 그 후 부분적인 수정을 하여 ARB No.43(1953), ARB No.48(1957, APB Opinion No. 16을 발표하여 오늘날 미국의 합병회계의 처리규정이 확정되었다. APB No.16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구분기준, 회계처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 매수법

매수법(purchase method)은 기업을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방법이다. 개별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할 때는 매입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그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이 오늘날의 회계원칙이다. 합병회계에서도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회사의 자산을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부채도 일괄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병법인은 취득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데 이때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매수법에서는 공정시장가치가 합병거래를 기록하는 기준이 된다.²⁾

(1)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

매수법은 합병을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취득원가를 개별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이다. 매수법에 의한 합병은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피 합병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일치할 때 회계처리시의 문제점은 거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첫째, 피 합병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로는 피 합병법인과 합병함으로써

2) 김영청, 중급회계, 박영사, 1987, pp.720-721

서 시장확대 등의 영업상의 유리한 조건이 예견되거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 합병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영업권(goodwill)이 발생된다.

회계연구조사 제10호(Accounting Research Study No.10)³⁾에서 영업권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은 우수한 경영자, 고도의 판매조직, 시장지배능력, 생산 또는 제조상의 비법, 생산요소의 독점력, 양호한 노사관계, 대외적인 높은 신용, 광고·선전 타 기업과의 유리한 관계, 기업의 전략적 소재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인 영업권(goodwill)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영업권은 상법⁴⁾에서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이기간 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⁵⁾에서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40년 이내의 결산기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개별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할 때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당사자의 세력관계에 따라 기업의 대가가 그 기업의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을 수 있다. 회계원칙심의회 의견 제16호(APB Opinion No.16)에서는 불안정경쟁시장의 원리 때문이라고 한다⁶⁾.

1.2 지분풀링법

지분풀링법(pooling of interests method)은 지분공동계산법이다. 즉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회계실체를 구성하며 이 주주지분은 새로운 회계실체 내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방법이다.

지분풀링법에서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지분이 새로운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종래의 지분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종래의 주주는 새로운 회사에서도 그대로 주주로 남는 것이며 때로는 경영자도 새로운 회사의 경영자로 남을 수 있다.

3) George R. Catlett and Norman O. Olson, "Accounting for Goodwill,"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0, 1968, pp. 17-18

4) 상법 제452조 제6항.

5) 기업회계기준 제63조 ②

6) "Business Combination," Opinions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16 par 91.

Wyatt⁷⁾는 지분풀링법을 結婚(marriage)이라고 표현하고 합병할 기업의 종래의 지분을 그대로 합쳐 새로이 연합된 기업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분풀링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합병법인에 인계하기 때문에 합병전이나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은 변화가 없게된다. 즉 합병의 경제적 본질은 합병당사법인간의 거래라기보다는 합병 당사 주주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stock holders)로서 주주간의 지분의 재조정(rearrangement of interests)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분풀링법에서는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인수되기 때문에 피 합병법인에서 사용되었던 역사적원가(historical cost)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⁸⁾는 규정과 현재의 실무에서도 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역사적 원가주의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무와 지분풀링법은 일치할 수 있다. 셋째,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株當純利益의 稀釋化(dilution)을 회피할 수 있

다.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계상과 상각기간 등의 결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계정과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의 계상을 회피할 수 있다.

Wyatt는 지분풀링법은 일반적으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과거에 존재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하나의 회사로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회계책임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 지지하고 이 가정은 실제로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전의 개별 경제주체가 하나의 경제행위로 합병하는 즉 풀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지분풀링법을 지지하고 있다⁹⁾.

Hendriksen은 지분풀링법은 幻覺的(illusory)·欺瞞的(deceptive)인 것이므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중 선택할 때에 결정적 요소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지분풀링법의 이점을 이용하여 합병시에 지분풀링법을 많이 사용하고 지분풀링법이 근본적으로 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게 하는 회계방법으로서 이익조작의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어 會計濫用(accounting misuse)을 억제하기 위하여 APB Opinion No.16¹¹⁾에서는 지분풀링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의 속성, 지분의 결합방식, 계획적인 거래인가의 판단기준 등에 따라 12가지 기

7) Arthur R. Wyatt, "Mergers Acquisitions and Pooling of Interests,"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S. Davidson and R.L. Weil McGraw - Hill Book Co., pp. 33-34.

8)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1항

9) Arthur R. Wyatt, "A Critical Study o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 Accounting Research Study No.5, AICPA, p.15.

10)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4th ed., Homewood, Ill Irwin, Inc., 1982, p.494

11) Business Combination, op.cit., par. 91.

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 플링법의 적용을 못하고 매수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경제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합병과 분할을 하는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변혁기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문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하여 합병과 분할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많고 회계이론 보다는 상법 또는 세법 등 합병실무를 규제하는 법률에 일치하도록 제정되어 기업인수나 합병 등 기업결합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결국 기업인수와 합병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분할 및 분할합병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분할 및 분할 합병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할 및 분할합병이 입법

화됨에 따라 상법과 법인세법을 지원하고 기업회계처리상에 나타나는 분할·합병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1999년 3월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의 명칭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변경한 것은 상법상 합병뿐만 아니라 기업인수·영업양수도 등 모든 형태의 기업결합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인수·합병의 회계처리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은 타 회사 주식의 인수·기업간의 합병·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에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고 기업결합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거래와 지분통합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매수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결합은 매수법을 적용하고 매수회사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분통합법¹²⁾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

12) 지분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장 3. 다.)

정하고 있다.

2.2 매수법의 회계처리

매수법은 한 회사(매수회사)가 다른 회사(피 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매수법에서는 피 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고 잉여금은 승계하지 않는다. 매수원가는 매수를 위하여 지급한 자산이나 발행한 주식 등 모든 매수대가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매수와 관련하여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이때 영업권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상각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반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지분통합법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

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하는 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실체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며, 결합참여회사의 경영진이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업결합에서는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분통합기업결합은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이상의 여부는 지분통합일에 유효 중인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③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률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안된다.

매수법, 지분풀링법 및 합병회계처리 준칙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매수법 지분풀링법 및 합병회계처리준칙과의 비교

구분	APB Opinion No.16		합병회계 처리준칙	
	매수법	지분법	매수법	지분통합법
합병거래의 기본가정	피합병법인의 매입	합병당사기업의 주주 지분의 결합	피 매수회사의 매입	주주지분만 결합하는 경우 장부가액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공정가액으로 평가	장부가액으로 승계
합병대가의 결정	공정가치	액면가액	공정가액	액면금액
합병대가가 순자산보다 적을 경우의 차액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서 감액하고 부족하면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	자본잉여금	부의 영업권. 발생원천에 따라 이익으로 환입함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부의 영업권 발생 않는다.
합병대가가 순자산보다 클 경우의 차액	영업권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부족하면 이익잉여금에서 감액	영업권. (2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므로 영업권 발생 않는다.

Ⅲ. 합병과 관련된 세제

기업이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업합병과 기업분할¹³⁾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기업의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이익이라면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합병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며 또한 합병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주식 등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합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인데 이를 과세거래로 본다면 기업의 합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나아가 기업의 외적성장을

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합병차익의 세무처리

1.1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합병차익이란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 자산가액이 그 회사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과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초과한 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합병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분할차익과 같이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13) 기업분할은 하나의 기업체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경영의 소형화를 이루고 재산 상속수단 또는 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용된다.

다¹⁴⁾. 그러나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합병차익 등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보지 않고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1.2 합병차익의 익금산입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가액 중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되는 자산가액이 증가하고 나아가서 합병차익도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자산가액은 합병 후 감가상각 과정 또는 자산의 양도라는 과정을 거쳐 손금에 산입하게 되고 손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합병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합병으로 인하여 손금을 추가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으로 인한 합병차익을 합병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1.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1.3.1 합병차익의 과세이연 목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토지 등(토지 및 건축물을 말함)의 가액 중 당해 자산

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모든 합병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합병이 기업의 외적성장과는 관계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업목적 합병 요건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비 금전대가 요건 :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사업의 계속성 요건 :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영위 할 것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래 합병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면 합병을 통한 기업의 외적성장 및 구조조정을 저해할

14) 법인세법 제17조.

15) 법인세법 제44조 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 및 건축물의 합병 평가차익에 한하여 법인세를 이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1.3.2 손금산입방법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개별자산별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방법은 국고보조금 등의 과세 이연방법을 준용한다.

1.3.3 사업폐지 등의 경우 익금산입

합병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¹⁶⁾.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①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 (후자법인이 결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16) 법인세법 제44조 ②.

17) 법인세법 제45조 ①

2.1 이월결손금의 공제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이 소멸함에 따라 피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도 소멸하기 때문에 합병 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¹⁷⁾.

①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할 것.

④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액총액)의 10% 이상일 것

⑤합병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 일부터 합병등기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기준을 대부분 숫자의 개념(6월, 1년, 2년, 5%, 10%, 20%, 30%)을 사용하여 이월결손금의 판정여부를 결정하는 형식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기준에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판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형식기준을 중시하다 보면 합병당사회사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게 되며 또한 형식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질기준을 두어 형식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사업을 영위, 사업의 계속성, 구분경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⁸⁾.

외국에서도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일정한 계량화된 수치에 의한 형식기준과 다음과 같은 실질기준을 두고 형식기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¹⁹⁾

- ①확실한 사업목적(sound business purpose)
- ②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③지분의 계속성(continuity of interests)

④단계거래의 원칙(step transaction)

2.2 이월결손금공제 한도액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합병등기 일을 사업연도의 개시 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것을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3 구분경리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4 폐업 등으로 인한 추정

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

18) 법인세법 제45조①.

19) 이우택, 월간조세, 1995. 5, p.72.

법인이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은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의 경우를 준용하되 2 이상의 사업을 승계 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에 대한 결손금공제배제(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3.1 조세회피목적의 이월결손금

기업 합병시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흑자가 발생되는 합병기업이 적자가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을 피 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반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흑자가 있는 기업을 피 합병법인으로 는 逆合併을 함으로서 이월결손금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적자기업이 흑자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음으

로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부당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통한 이월결손금의 양도에는 제한이 없다.

3.2 부당합병의 요건

다음에 해당되는 합병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다.

①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③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4. 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4.1 청산소득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피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²⁰⁾ 이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부과할 때 착오 또는 오류 등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부과를 보완하는 필요성과 법인의 설립 일부터 합병할 때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었거나 합병시에는 법인의 소득으로 실현되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부과의 근거가 되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및 조직을 변경하는 법인은 청산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4.2 포함주식

포함주식이라 함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즉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을 말하며 이 포함주식으로 인하여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포함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포함주식 등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함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함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자산과 부채의 승계

상법에서는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은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고 고정자산을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²¹⁾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평가방법은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²²⁾ 거래소에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시세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며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합병방법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승계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20) 법인세법 제80조 ①.

21) 상법 제31조

22) 상법 제452조

<표 2>에서 매수법을 적용할 때는 자산과 부채의 승계방법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시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자산과 부채의 승계는 기업합병이 매수법이나 또는 지분통합법 중 어느 것으로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정한 합병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선택에 따라 매수법이나 지분통합법 어느 방법으로도 승계가 가능하다. 합병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에 등록세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고 피합병법인에서 계산된 감가상각액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합병후 법인의 감가상각계산과는 무관하다.

개정된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³⁾

5.1 이연자산과 이연부채의 승계

이연자산과 이연부채는 인식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이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5.2 재고자산의 승계

제품 및 상품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

과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재공품은 제품의 추정판매가액에서 재공품을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와 제품의 판매비용 및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3 유가증권의 승계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그 시가로 승계한다.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발행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률,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으로 한다.

5.4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수일에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①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②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피 합병법인 등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23)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처리준칙 제8조 가.

따라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③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된 익금산입액 또는 손금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6.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인식하여 과세한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으로 하며 출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으로 한다. 주식 또는 출자금액이 금전이외의 것일 때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가액으로 한다.

6.1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한다.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 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6.2 무상주의 의제배당

합병이 완료된 후 합병법인 등이 자본잉여금인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무상주를 교부 받게 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IV. 합병세제의 검토

1. 영업권평가 규정의 보완

영업권이란 합병법인이 승계순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보통 기업의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 독점적 지위, 유리한 입지조건, 우수한 경영진 등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에 초과수익을 얻게되는 무형의 것으로 평가된다.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리되거나 특정의 기업자산과 분리하여 매각될 수 없으며 또한 영업권은 기업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개발된 영업권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구입된 자산만이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공정가치에 의한 방법, 초과수익력 개념에 의한 평가방법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영업권은 다양한 개념과 보

는 측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의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업권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합병시 영업권의 인식과 평가는 합병당사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합병당사자들의 임의적인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영업권의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이 어렵게 되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법 제452조 6항에서는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매수일 현재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중요한 감액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될 수 없다²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회계변경을 통하여 분식결산할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시 영업권의 개념을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의 기업합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중의 하나가 영업권의 평가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합병과 관련된 세무처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영업권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자산과 부채의 승계문제

기업합병의 목적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외적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을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분류하고 피합병법인로부터 취득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수일에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한 합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적인 합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합병방법에 따라서 합병시 중요한 부분인 자산의 승계문제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승계자산의 평가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다음 세대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24)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처리준칙 제9조 가,나,다,라.

25)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 . . 16

합병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기업 합병을 지원하고 객관성있는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3. 이월결손금의 승계

피 합병법인이 소멸함에 따라 피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도 소멸하기 때문에 합병 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 합병법인이 계상한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못하면 합병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외적성장이 기업의 목적대로 이룰 수 없게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무한정 용인하게 되면 기업의 구조정보다는 계열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는 상반성(trade off)의 문제로 될 수 있다.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9년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계량적인 수치로 형식적 기준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여기서 형식 기준은 ①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평가차의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첫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과 합병일 것.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

병대가의 총 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셋째, 합병법인이 합병 등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 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액총액)의 10%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이러한 형식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사업의 영위, 사업의 계속성, 구분 경리하도록 하는 실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실질기준을 ①확실한 사업목적 ②사업의 계속성 ③지분의 계속성,

④단계거래의 원칙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합병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한 형식기준은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계량적인 수치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이 없고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형식 기준을 보완하고 합병기업당사들의 합병환경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사업의 영위와 같은 실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기준을 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합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합병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외적인 성장을 위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그 본질이 다르나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의 외적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합병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회계기준과도 차이가 많고 회계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합병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의 합병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1999년 3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합병의 방법을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구분하고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의 기업합병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합병과 관련된 과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 IMF의 구제금융이후 기업의 합병문제가 대두되고 기업회계에서 합병회계준칙이 제정되는 경제현실상황에 부응하여 1999년에 비로소 법인세법에서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합병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합병에 관한 특례조항은 영업권의 평가등 여러 분야에서 정비되지 못한 것과 합병이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복잡한 수치로 접근하고 있어 기업의 합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평가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업권이란 합병법인이 승계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기업의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 독점적 지위 등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에 초과수익을 얻게되는 무형의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적으로 개발된 영업권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구입된 자산만이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공정가치에 의한 방법, 초과수익력 개념에 의한 평가방법등 여러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영업권은 다양한 개념과 보는 측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의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업권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합병시 영업권의 인식과 평가는 합병당사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합병당사자들의 임의적인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영업권의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이 어렵게 되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매수일 현재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시킬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시 영업권의 개념을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의 기업합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중의 하나가 영업권의 평가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합병과 관련된 세무처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영업권 평가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산과 부채 등의 평가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표 2>의 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는 합병의 방법을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분류하고 자산의 승계에 관한 문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한 합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적인 합병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선택적인 합병방법에 따라서 합병시 중요한 부분인 자산의 승계문제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승계자산의 평가문

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다음 세대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기업합병을 지원하고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

피 합병법인이 소멸함에 따라 피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도 소멸하기 때문에 합병 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 합병법인이 계상한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못하면 합병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외적성장이 기업의 목적대로 이를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무한정 용인하게 되면 기업의 구조조정보다는 계열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는 상반성(trade off)의 문제로 될 수 있다. 1999년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계량적인 수치로 형식기준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형식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사업의 영위할 것 등의 실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한 형식기준은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계량적인 수치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이 없고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형식기준을 보완하고 합병기업당사들의 합병환경을 이해하여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성 등의 한정적인 실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기준을 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합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Modern Accounting, Weil McGraw-Hill Book Co.

Geroge R. Catlett and Norman O.,
Accounting for Goodwill,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0, 1968.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4th*, Homewood, Ill Irwin, 1982.

참 고 문 헌

김주택외, *세무회계*, 신론사, 1999.

_____외 *새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7

이우택,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1.

_____, *월간조세*, 조세통람사, 1999.5.

이준규, *법인세법*, 세학사, 1999.

이중희,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분석적 고찰*,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1995.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999.

조세편람, 조세통람사, 1999.

Business Combination, Opinions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16
Par. 91

Arthur R. Wyatt, *Mergers Acquisitions and Pooling of Interests*, Handbook of

A Study on the Merger and Related Taxes

Ju-Taek Kim*

Abstract

The merger of companies makes it easily that a company get over the limitation of the growth of their internal size. A company can attain its purpose, the growth of itself, merging of existing company.

On December 1986,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Combinations" were pronounced in Korea. But, some of contents of the standards contain many problems criticized in accounting.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all kinds of affairs problems resulting from merger in Korea and to present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I have reexamined the method and provision of on 1999,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Combinations" were pronounced in Korea and developed to the direction of trying to deal with tax affairs reasonably. Next, related to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merger, I have described, centered on tax laws, basic rules and the provisions of taxation on merger corporation and the provision of taxation on shareholders at the time of merger.

*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angji University